



재해 개요

- 2018.11.29(목) 경기 광주시 소재 ○○산업(주)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진공차단기 패널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용 포크를 연결한 굴삭기로 드는 순간 패널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이동 작업 중인 진공차단기 패널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
 - 굴삭기의 지게차용 포크를 진공차단기 패널 하부에 집어넣고 지게차용 포크를 인상할 때 높이가 2.7m이며 균형이 맞지 않은 패널이 전도 될 위험이 있었으나, 별도의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용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패널이 균형을 잃고 넘어짐



재해 예방 대책

- 전도위험이 있는 자재(진공차단기 패널) 이동작업 시 전도방지조치 실시
 - 진공차단기 패널을 굴삭기의 지게차용 포크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경우에는 지게차용 포크를 인상하기 전에 패널이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, 버팀대 등으로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패널을 인상하여 이동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- 진공차단기 패널을 이동하기 위한 작업방법 개선
 - 높이가 2.7m인 진공차단기 패널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패널 하부에 받침판을 설치하여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패널을 인상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역운반전용의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